

의안번호	2212640
의 퇴 인	임호선 의원
회 답 일	2025. 11. 10.
추계번호	25E48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년생작물 재배업 소득 비과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2호 아목신설 (비과세소득)	- 다년생작물 재배업 관련 소득 비과세 (현행) 작물생산 관련 소득 중, 논·밭 작물 및 해당 과세기간 합계 수입 금액 10억원 이하 생산소득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개정안)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작물의 재배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조세지출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2조2호아목신설 (비과세소득)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다년생작물 재배업 관련 소득을 비과세할 경우 세수감소가 예상

- 현행은 작물생산 관련 소득 중, 논·밭 작물(「소득세법」 제12조2호가목) 및 해당 과세기간 합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소득세법」 제12조2호바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생산소득에 대해 비과세
- 개정안은 다년생 작물 관련 소득세 과세기준에 수확시점을 적용하여, 생육기간 2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작물의 재배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다년생작물 재배업자의 전체

종합소득 구간에 따른 경작 관련 현황 및 사업소득 규모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현재 이에 대한 통계가 미집계되고 있으며, 향후 경작 현황 및 사업소득 규모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어려움

- 또한, 비과세 대상이 되는 다년생 작물의 범위, 관련 재배연수 계산 등을 하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대상 재배작물 사업자의 범위가 불명확함

□ 참고로, 대표적 다년생 작물인 인삼의 경우, 현재 재배 농가수(조합원수)는 1만7,662호, 재배면적은 1만1,745ha이며 연근수별로는 4년근의 재배면적 비중이 23%로 가장 높음

[표 1] 인삼 재배 농가 및 연근별 경작 면적 현황: 2023년

(단위: ha)							
구분	계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	조합원수(호)
신고포 ¹⁾	5,789	750	1,295	1,436	1,203	1,105	17,662
지정포 ²⁾	5,956	1,147	1,285	1,301	1,220	1,003	
합계	11,745 (100%)	1,897 (16%)	2,580 (22%)	2,737 (23%)	2,423 (21%)	2,108 (18%)	

주: 1) 재배농가 자체 재배 및 수확 후 판매조건 결정

2) 재배농가가 한국인삼공사, 인삼농업협동조합 및 개별 가공업체 등과의 재배면적, 납품물량, 납품가격 등에 대한 계약에 따라 수확 후 납품

자료: 농림축산부 자료(「2023년 인삼통계자료집」, 2024.11.)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성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성은	02-6788-4668	ixsepark@assembly.go.kr